

#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·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0-12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## 1. 제안 이유

거창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공공 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, 상위 법령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결정기준 등이 명시되어있음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용료 산정기준 등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필요에 따라 신속한 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절차나 서식 등을 규칙으로 위임

- 1) 폐수 등 유입처리 승인·승인변경 신청 및 절차(안 제3조제2항)
- 2) 배수설비 개시 신고(안 제6조)
- 3) 사용료 부과절차(안 제10조)

나. 사용료 산정기준, 사용료 지원금 산정기준 규칙으로 위임(안 제10조·제11조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8조의2·제48조의3·제50조, 같은 법 시행령」 제62조~제64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 36,000천원 확보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

라. 기타사항

- 1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
  - 가) 예고기간 : 2020. 1. 21.~2. 10.
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 : 불입
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##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·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)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·폐수를 공공 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는 자는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 
② 제1항에 따른 승인·승인변경 신청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 중 “배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”를 “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를 군수에게 해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·징수) 군수는 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을 부과·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로 부담금의 산정 방법을 고시해야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·징수)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(이하 “사용료”라 한다)는 규칙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월별로 부과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제10조제2항”을 “제10조”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원 금액은 별표 2의 산출기준에 따른다.”를 “지원금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0조·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3조(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)</u></p> <p>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·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는 자는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(변경)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</li> <li>2. 공장건물 배치도</li> <li>3.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</li> <li>4. 원료(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) 사용량,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</li> <li>5. 오수 및 폐수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</li> <li>6.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</li> <li>7.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</li> <li>8. 자체 수질관리 계획</li> </ol> <p>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기관에서 해당 서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.</p> <p>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(변경) 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</p>	<p><u>제3조(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)</u></p> <p>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·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는 자는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승인·승인변경 신청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오수·폐수 유입 처리를 승인하거나 그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 시설 유입 처리 (변경)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6조(폐수 등 배출 신고)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·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9조(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·징수)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을 부과·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로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고시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5조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폐수 등 배출 신고일부 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납부일은 서면으로 알린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.

제10조(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(이하 “사용료”라 한다)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사용료는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, 군수는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월

제6조(폐수 등 배출 신고)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·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를 군수에게 해야 한다.

제9조(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·징수) 군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을 부과·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로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고시해야 한다.

제10조(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·징수)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(이하 “사용료”라 한다)는 규칙으로 정하는 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월별로 부과한다.

의 사용료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.

**제11조(사용료 부담지원) ①** 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초기입주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용료 일부를 제2항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100분의 60이 될 때까지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별표 2의 산출기준에 따른다.

**제11조(사용료 부담지원) ①**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초기입주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용료 일부를 제2항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100분의 60이 될 때까지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·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: 사용료 부과·징수에 따른 비용발생

나. 관련조문 : 제10조(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·징수)

### 2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합계
농도 분석비	36,000	36,000	36,000	36,000	36,000	180,000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·징수를 위한 오수·폐수 등의  
오염농도 산정을 위해 자격을 갖춘 환경업체에 검사의뢰 후 수  
수료 매달 지급 = 연 36,000천원

작성자 : 미래전략과장 김성윤